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설치 및 기능)”을 “(설치 및 존속기한)”으로 하고, 동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청계천복원공사의 준공일까지 존속한다.

제6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역사문화분과위원회 : 문화국장
2. 자연환경분과위원회 : 환경국장
3. 건설안전분과위원회 : 건설기획국장
4. 교통분과위원회 : 교통국장
5. 도시계획분과위원회 : 도시계획국장
6. 시민의견분과위원회 : 대변인

제7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계천복원공사 준공일 당시의 위원임기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45
------	-----

2004년 9.  
도시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04. 8. 19
- 위원회 회부일자 : 2004. 8. 23
- 상정일자
  - 제151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2004. 9. 9)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도시계획국장 이종상)

가. 제안이유

- 서울시 균형발전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뉴타운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뉴타운사업지구안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120퍼센트 이하에서 1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안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함(안 제55조제1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양재대)

가. 개정내용

- 서울시 균형발전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뉴타운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뉴타운사업지구안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120퍼센트 이하에서 150퍼센트 이

하로 완화하기 위해 2004.3.15부터 22일간의 임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출되었음

나. 개정안의 주요특징

개정안의 주요요지

-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지구안의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음

검토결과

-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은평뉴타운 등 도시개발구역내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원주민과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현행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제2종전용주거지역 상한용적률 150% 이하까지 완화시키는 것으로
- 은평뉴타운사업지구는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108만여평) 개발제한구역내 낙후지역 시가지를 개발, 정비하여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임대 및 분양주택의 건립을 통해 서민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공급계획은 14,000세대 39,200명으로 단독 600세대, 연립 1,500세대, 임대아파트 4,750세대, 분양아파트 7,150세대이며, 개발방식은 도시개발방식에 의한 공영개발로 사업시행자는 SH공사임
- 지난 2003.12.30 건설교통부로부터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시 “「집단취락 등 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하여 300호 이상 취락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중밀도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까지)을 부여할 경우 국민임대주택단지(국민임대주택이 총세대수의 50% 이상인 주택건설지역) 조성사업 부지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승인조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 세대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8호(2004.2.24)로 고시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내용중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에 대한 용도지역도 제1종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세분되어 있는 바, 건설교통부의 승인조건 이행과 뉴타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긴 하나 전용주거지역에 충고제한 없는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용적률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총고 4층이하)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은 용도지역 관리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구나 특정지역을 겨냥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임법체계상의 균형성, 형평성을 해칠 우려는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